


전자책 스트리밍 유통에 관한 계약서

_____ (이하 "갑"이라 함)와 (주)마이리틀북 (이하 "을"이라 함)은
 '전자책 스트리밍 유통에 관한 계약'에서 필요한
 상호 공동 협력과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요약]

1. 계약 명 : 전자책 스트리밍 유통에 관한 계약
2. 계약 기간 : 계약일부부터 1년
3. 계약 대상 : "갑"이 보유한 기 출판된 책 콘텐츠
4. 계약 내용 :
 - 1) "갑"은 본 계약에 의하여 전자책 콘텐츠를 "을"에게 제공하며, "을"의 유통채널을 통해 판매, 유통함을 허용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복제권과 전송권을 허용한다.
 - 2) 전자책 콘텐츠 제작은 "을"이 전담하며, "갑"은 콘텐츠의 원활한 제작/판매가 가능하도록 적극 협조한다.
 - 3) 전자책 콘텐츠는 "을"의 유통채널에서 "갑"이 요구하는 유통단위(전권/분권/페이지) 단위로 판매되며,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판매수익의 80%는 "갑"이 20%는 "을"이 갖는다. 유통 단위(전권/분권/페이지) 및 판매/대여 가격은 "갑"이 정하며, "갑"의 요청에 의해 콘텐츠 수명 주기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4) 전자책 유통채널은 "을"이 제작하는 스마트폰 및 태블릿 앱(APP)이다.
5. 본 계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계약 세부사항에 명시하며, "갑"과 "을"은 상호신의를 바탕으로 이를 따르기로 한다.

2020 년 월 일

	갑	을
상호		(주)마이리틀북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 에이스하이테크시티 4동 415호
사업자 등록번호		667-81-00796
계좌번호	(은행)	-
대표 (서명)	(인)	정 연 호  (인)

계약 세부사항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스트리밍 전자책(전권/분권/페이지 유통)을 제작, 판매, 유통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상호 간에 필요한 제반 협력사항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된 특정의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그 밖의 용어에 있어 “갑”과 “을” 사이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등 관련 법령과 이를 관장하는 주무부서의 해석에 따른다.

1. '스트리밍 전자책'이란 도서로 간행되었거나 될 수 있는 콘텐츠(저작물)가 디지털 데이터 형식으로 전자적 기록매체나 저장장치(서버)에 수록된 후, 유무선 통신망을 통해 휴대용 단말기(스마트폰 또는 태블릿PC)로 그 내용을 읽을 수 있도록 한 전자책이며,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되지 않고 매 페이지를 열때마다 서버에서 사용자 단말로 페이지 단위로 전송되고 열람된 페이지에서 다른 화면으로 이동하면 해당 페이지가 삭제되는 형식의 전자책이다.
2. '전권 전자책'은 '스트리밍 전자책'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전체 책 콘텐츠를 의미하며, 분할되어 판매/대여되지 않고, 1권(단행본) 단위로만 판매/대여하는 전자책 콘텐츠이다.
3. '분권 전자책'이란 '스트리밍 전자책'을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 것으로 “갑”이 요구하는 크기로 분절하여 판매/대여할 수 있는 전자책이다.
4. '페이지 전자책'이란 '스트리밍 전자책'을 페이지 단위로 구분한 전자책으로 매 1 페이지를 판매단위로 보는 전자책이다.
5. '본 계약 콘텐츠'이란 “갑”이 본 계약과 함께 “을”에게 제공할 모든 콘텐츠(저작물)를 말한다. 제공 대상 콘텐츠와 제공시기는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제 3 조 (보증)

1. “갑”은 본 계약 콘텐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이 없이 적법하게 창작된 완전한 저작물임과, 저작물 유통에 필요한 모든 법적인 지위, 권리 및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증한다.
2. “갑”은 “갑”이 보유한 본 계약 콘텐츠의 저작권 등 이용권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최소한 3개월 전까지 이를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을”은 “갑”이 제공한 본 계약 콘텐츠의 저작권 등 이용권이 만료되는 시점에 해당 스트리밍 전자책 대한 판매를 중지해야 한다
3. 본 계약 콘텐츠의 대상이 되는 도서의 저작권자(작가)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 지급 등 수익분배는 “갑”의 부담으로 하여, “갑”이 지급한다.
4. 본 계약 콘텐츠에 관한 “을”의 제작, 판매, 유통과 관련하여 “을”이 제3자(작가, 타출판사, 타유통업체)로부터 저작권 등 권리 침해를 이유로 형사고소, 민사상 소의 제기 등 기타 이의제기를 당한 경우, “갑”은 “을”을 방어하고 면책시켜야 한다.
5. “을”은 본 계약 콘텐츠를 제작, 유통함에 있어 불법복제 혹은 해킹 등으로 인해 지적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다.

6. "을"은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콘텐츠가 불법 유통되었을 경우, "을"의 비용으로 방어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만일 "갑"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비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갑"에게 그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7. "갑"과 "을"은 스트리밍 전자책 제작, 판매, 유통 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제 4 조 (계약기간 및 갱신)

1.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만 1년으로 한다.
2. 본 계약의 재계약은 종료시점에서 상호합의하에 진행한다.

제 5 조 (스트리밍 전자책 제작 및 권리)

1. "갑"은 본 계약기간 동안 "을"이 스트리밍 전자책을 제작할 수 있도록 편집이 완료된 디지털 파일 상태의 도서데이터와 실물 도서를 "을"에게 제공한다. 도서데이터는 계약기간동안 "을"이 보관하며, 실물도서는 제작완료 후 "갑"에게 반환한다.
2. "을"은 본 계약 종료 이후에는 "갑"이 제공한 본 계약 콘텐츠로 제작된 스트리밍 전자책(본 계약 콘텐츠)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배포할 수 없다. 단 "을"의 소비자에게 기 배포, 판매한 스트리밍 전자책의 이용에 관한 권한은 이 계약 종료 이후에도 소비자에게 존속한다.
3. "을"이 제작하는 스트리밍 전자책은 사용자 단말에 전자책 파일(ePub/PDF)이 다운되지 않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유통된다. 스트리밍 방식이란 기존 다운로드 방식의 반대 개념으로, 무선 네트워크 연결이 끊어진 환경에서는 전자책이 사용자 단말에 존재할 수 없어 전자책 보기가 불가능하고, 네트워크가 연결된 상태에서만 매 페이지마다 서버와 통신을 거쳐서 1페이지 단위로 불러와 표시 후 즉시 소멸되는 특징을 갖는다.
4. 스트리밍 전자책은 열어 본 페이지에 대해서 정확한 확인이 가능하기에 기술적으로 환불 가능한 전자책이다. "갑"은 "을"에게 제공되는 개별 콘텐츠에 대해 환불 가능여부를 유통이전에 미리 통보해야하며, 통보가 없는 경우 판매촉진을 위해 환불 가능(구매 후 7일 이내)한 콘텐츠로 표시하고 유통한다. "을"은 환불가능기간(구매 후 7일 이내)에 구매자에게서 환불 요청이 발생한 경우 판매가격에서 열어본 페이지 만큼의 가격을 자동으로 공제하고 환불을 제공한다. 환불 시점과 최초 구매시점이 다른 정산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환불금액은 이후 정산 시점에서 SCM을 통해 자동 공제하여 정산한다.

제 6 조 (전송권 사용료 보고 및 지급)

1. "을"은 스트리밍 전자책 서비스에 따른 전송권 사용료(판매금액 중 "갑"의 수익, 판매 정산액)를 1일부터 말일까지 정산 마감된 판매분에 대하여 익월 25일까지 현금(계좌이체)으로 이체한다. 기 정산 마감된 판매분 중 매출의 취소, 철회, 해지, 해제가 발생한 경우 익월 정산에 반영한다.
2. "을"은 "갑"이 발생한 매출통계를 원활히 조회할 수 있도록 SCM 시스템(출판사용 웹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3. "갑"은 "을"에게 판매 정산액에 대한 계산서 발행을 판매 정산액 수신 후 1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 7조 (수익분배)

본 계약에 의한 스트리밍 전자책 유통에 따른 구체적인 기술적 조치 및 판매 방법, 이용료 및 이용료 분배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기본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갑"은 스트리밍 전자책의 정가를 "갑"의 재량으로 책정하여 "을"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을"은 "갑"이 책정한 스트리밍 전자책의 정가를 준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종이책 출간 이후 책 수명주기에 따라 적용되는 할인율이 있는 경우 "갑"은 이를 "을"에게 통보해야 하며, "을"은 이를 적용해야 한다.
2. 구매자가 스트리밍 전자책을 구입하여 "을"에게 매출이 발생할 경우, "을"은 "갑"에게 결제수수료를 제외한 실수익금액에서 스트리밍 전자책 판매가(부가세 포함)의 80%를 지급한다. 이때 지급금액에 대한 부가세 영수증(세금계산서)을 "갑"이 발급하여 "을"에게 제공한다. 단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판매가(공급가)의 80%를 지급하며, "갑"은 계산서(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 "을"에게 제공해야 한다.
3.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는 "을"의 요청이 있을 때 "갑"이 10일 이내에 발행한다.

제 8조 (서비스의 중단 및 손해배상 등)

1. 본 계약 기간 동안 각각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의 범위에 따라 상대방에게 배상의 책임을 진다.
2. 제3조에 의한 보증에도 불구하고 "갑"이 제공한 본 계약 콘텐츠와 관련하여 저작권법 또는 기타 법률 위반을 이유로 국내 및 국외의 제3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에 "을"은 "갑"에게 통보하며 "갑"과 협의 하에 해당 콘텐츠에 대하여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
3. 제3조 2항의 저작권 등의 이용권 만료에 대한 통지를 정해진 기간 내에 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하여 "을"에게 발생한 비용 및 손해는 "갑"이 부담한다.
4. 위 2항과 같은 이유로 "을"이 국내 또는 국외의 제3자로부터 소송, 청구, 이의제기, 형사소추, 중재절차 등의 법적 분쟁을 당한 경우, 그 밖의 사유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을"에게 발생한 손해 전액을 즉시 배상한다.

제 9조 (불가항력)

1. 천재지변, 전쟁, 폭동, 노동쟁의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 당사자의 어느 일방이 일시적으로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당사자의 어느 일방도 위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행 지체 또는 상대방이 받은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갑" 또는 "을"은 위 1항에 의한 불가항력 사유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불가항력으로 인한 지체의 정도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적절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10조 (계약의 해지 및 보상)

1.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서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위 계약 위반의 상대방 당사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의무 이행을 최고하고, 위 계약 위반을 한 당사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당사자 일방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 가) 부도로 인한 지급 불능 상태가 발생하거나 회생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경우.
 - 나) 법인인 경우 청산, 합병 등으로 인하여 법인격의 변경이 있고, 본 계약의 승계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경우.
3. 위 1. 또는 2.의 규정에 따른 계약 해지 여부와 상관없이,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의 상대방 당사자는 본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1조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후의 절차)

1. 본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될 경우에는 "을"은 지체 없이 "갑"이 제공한 '저작물'의 신규 사용을 중단한다.
2. "갑"은 본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된 경우 "을"에게 저작물의 사용을 중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 기간을 60일 범위 내에서 인정할 수 있다.
3. 본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이후에 "을"이 사용을 중단하기 위한 준비 기간 동안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득이하게 사용했을 경우 기존의 계약 조건에 따라 전송권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 12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은 "갑"과 "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수정 보완할 수 있다.

제 13조 (분쟁의 해결)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법원에의 제소에 앞서 "갑"과 "을"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 14조 (관할법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어느 일방이 제소할 경우 제1심 법원은 "갑"(또는 "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 15조 (부칙)

1. 본 계약 및 기타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저작권법 및 민법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 "갑"과 "을"은 본 계약에서 규정한 조항들을 철저히 준수하고, 계약이 원만하게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원본 2통을 작성한 후 서명 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